



의안번호	제 2015 - 22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6. 8. (제6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6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34
1. 개요	34
2. 추진 경과	34
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35
1. 개요	35
2. 추진 경과	35
IV.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36
1. 개요	36
2.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36
V.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43
VI.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44
1. 전문위원 개임	44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45

VII.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47
1. 개요	47
2. 관련 규정	47
3. 공개 방법	47
4. 추진 일정	48
VIII. 2014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49
1. 개요	49
2. 수록내용	49
3. 2014. 4. 27.~2015.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49
4. 향후 추진 일정	51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52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52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53
□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 별첨 1. 「관보게재용 양형기준」	
2.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5. 1. 31.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5. 1. 3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76	0	76
	강도살인미수	25	0	25
	살인	1,621	21	1,642
	살인교사	6	0	6
	살인미수	2,224	20	2,24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41	2	43
	존속살해	167	2	169
	존속살해미수	80	0	80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1	0	1
	전체	4,248	45	4,293
뇌물범죄	뇌물공여	2,870	54	2,924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3	0	3
	뇌물공여의사표시	13	4	17
	뇌물수수	2,017	55	2,072
	뇌물약속	2	0	2
	뇌물요구	4	0	4
	부정처사후수뢰	99	0	99
	수뢰후부정처사	112	2	11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전체
	제3자뇌물교부	152	4	156
	제3자뇌물취득	163	6	169
	특가법(뇌물)	680	13	693
	특가법(뇌물)교사	1	0	1
	전체	6,118	138	6,256
성범죄	강간	1,334	19	1,353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857	3	860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454	7	1,461
	강도강간	90	0	90
	강제추행	10,572	198	10,770
	강제추행상해	183	3	186
	강제추행치상	607	4	611
	미성년자의제강간	107	4	11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1	0	1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28	0	12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3	0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	1	3
	상습강제추행	14	0	14
	상습준강제추행	3	0	3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54	4	758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79	0	179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204	0	204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95	1	196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413	0	41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45	0	14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90	1	19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9	0	1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5	0	55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전체
	성폭력범죄(특수강간)	501	0	501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54	0	354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2	0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6	0	12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954	2	95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841	13	85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4	0	2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09	3	11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43	2	4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56	0	5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10	1	1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509	7	516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82	6	48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194	1	19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301	8	30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155	7	16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53	1	5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36	2	3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501	2	50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16	1	1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7	1	8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92	1	93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6	0	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1,191	4	1,19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19	1	20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2	1	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9	1	10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21	4	2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1	0	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19	4	32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09	8	41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1	1	4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91	2	9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210	8	1,21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45	0	34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95	0	19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556	6	56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52	0	5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259	7	3,26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22	0	2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39	0	3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1,645	43	1,68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81	8	18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50	7	15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81	3	8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50	0	5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12	1	1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328	4	33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20	3	2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2	0	2
	유사강간	105	2	107
	유사강간상해	7	1	8
	유사강간치상	19	0	19
	준강간	807	18	825
	준강간교사	1	0	1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83	1	8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전체
	준강제추행	1,530	34	1,564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8	0	18
	준유사강간	53	2	55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36,293	477	36,770
강도범죄	강도	721	2	723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3,174	28	3,202
	강도상해교사	3	0	3
	강도치사	22	0	22
	강도치상	256	3	259
	준강도	413	3	416
	준특수강도	67	0	67
	특가법(강도)	38	0	38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2	0	62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2,690	22	2,712
	전체	7,517	58	7,575
횡령·배임 범죄	배임	2,578	8	2,586
	배임교사	1	0	1
	업무상배임	3,242	26	3,268
	업무상배임교사	1	0	1
	업무상횡령	13,471	128	13,599
	업무상횡령교사	1	0	1
	특경가법(배임)	1,570	18	1,588
	특경가법(배임)교사	1	0	1
	특경가법(횡령)	2,212	16	2,228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2.	2015. 1.	전체
	횡령	12,183	128	12,311
	횡령교사	2	0	2
	전체	35,263	324	35,587
위증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5	0	5
	모해위증	91	0	91
	모해위증교사	4	0	4
	위증	6,441	84	6,525
	위증교사	897	12	909
	전체	7,438	96	7,534
무고범죄	무고	9,165	80	9,245
	무고교사	48	2	50
	특가법(무고)	37	0	37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9,251	82	9,333
총 계		106,128	1,220	107,348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5. 1.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전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7	0	7
	간음유인	11	0	11
	미성년자약취	55	1	56
	미성년자유인	32	0	32
	성매매약취	4	2	6
	성매매유인	0	1	1
	성매매인신매매	2	0	2
	영리약취	7	0	7
	영리유인	44	0	44
	추행유인	4	0	4
	특가법(약취·유인)	25	0	25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9	0	59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전체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1	0	1
	전체	251	4	255
사기범죄	사기	129,250	2,528	131,778
	사기교사	5	0	5
	상습사기	449	1	450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3	0	3
	준사기	101	2	103
	컴퓨터등사용사기	1,634	40	1,674
	특경가법(사기)	3,174	41	3,215
	전체	134,616	2,612	137,228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107	4	111
	산림보호법위반	171	3	1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730	15	7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1	0	1
	상습절도	22	36	58
	상습특수절도	5	1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991	34	2,0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3	0	3
	야간방실침입절도	180	3	183
	야간선박침입절도	7	1	8
	야간주거침입절도	1,244	28	1,272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23,345	418	23,763
	절도교사	66	1	67
	특가법(산림)	122	0	122
	특가법(절도)	7,326	48	7,374
	특수절도	11,527	140	11,667
	특수절도교사	34	1	35
	전체	46,882	733	47,615
공문서범죄	공문서변조	367	5	372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1,235	17	1,25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전체
	공문서부정행사교사	11	0	11
	공문서위조	1,054	21	1,075
	공문서위조교사	6	0	6
	공전자기록등변작	2	0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564	20	1,584
	공전자기록등위작	48	2	50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48	13	561
	변조공문서행사	18	0	18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79	0	79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36	0	36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133	3	136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173	1	174
	허위공문서작성교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9	0	9
	전체	5,291	82	5,373
사문서범죄	변조사문서행사	224	0	224
	사도화변조	1	0	1
	사도화위조	2	0	2
	사문서변조	219	10	229
	사문서변조교사	1	0	1
	사문서부정행사	13	0	13
	사문서위조	4,982	115	5,097
	사문서위조교사	16	0	16
	사전자기기록등변작	10	0	10
	사전자기기록등위작	63	0	63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3	0	3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3	0	3
	위조사문서행사	316	4	32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83	0	183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전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0	0	10
	허위작성진단서행사	9	0	9
	허위진단서작성	34	0	34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6,091	129	6,220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20,355	642	20,997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4	0	4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746	21	1,767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36	2	38
	공용서류손상	176	1	177
	공용서류은닉	11	0	11
	공용전자기록등손상	4	0	4
	위계공무집행방해	883	22	905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3	0	3
	특수공무집행방해	1,138	20	1,1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571	4	575
	특수공용물건손상	29	1	30
	전체	24,965	713	25,678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517	16	53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058	33	2,09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0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46	0	4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889	9	89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1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33	0	33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5,507	190	5,697
	식품위생법위반교사	4	0	4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2.	2015. 1.	전체
	약사법위반	1,336	47	1,383
	의료법위반	2,630	62	2,692
	의료법위반교사	8	1	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5	0	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780	19	79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77	1	78
	전체	13,917	378	14,295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985	15	2,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67	4	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1,196	159	11,35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130	9	1,139
	특가법(마약)	2	1	3
	특가법(향정)	51	0	51
	전체	14,531	188	14,719
총 계		246,544	4,839	251,383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5. 1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836	25	86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69	4	73
	증권거래법위반	84	1	85
	특경가법(수재등)	109	3	112
	특경가법(알선수재)	277	10	287
	특경가법(증재등)	89	2	91
	전체	1,464	45	1,509
지식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57	2	5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5	0	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84	4	18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	0	1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전체
	상표법위반	2,089	69	2,158
	실용신안법위반	18	0	18
	저작권법위반	1,535	57	1,592
	특허법위반	37	3	40
	전체	3,936	135	4,071
폭력범죄	상습상해	2	1	3
	상습존속폭행	2	0	2
	상습폭행	5	2	7
	상습협박	1	0	1
	상해	39,694	1,119	40,813
	상해교사	6	0	6
	상해치사	214	3	217
	존속상해	237	5	242
	존속상해치사	16	0	16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75	3	78
	존속폭행치사	6	0	6
	존속폭행치상	4	1	5
	존속협박	20	0	20
	중상해	120	7	127
	특가법(보복범죄등)	47	0	47
	특가법(보복상해등)	108	2	110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2	0	2
	특가법(보복폭행등)	88	2	90
	특가법(보복협박등)	185	4	189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000	64	2,064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33	5	138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5	0	5
	특수협박	188	8	196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전체
	폭처법(공동상해)	9,782	234	10,016
	폭처법(공동상해)교사	4	0	4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5	0	15
	폭처법(공동폭행)	2,577	95	2,672
	폭처법(공동폭행)교사	6	0	6
	폭처법(공동협박)	305	10	315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0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2	0	2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40	0	40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2	0	1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2	0	12
	폭처법(상습상해)	201	5	206
	폭처법(상습존속상해)	9	0	9
	폭처법(상습존속폭행)	8	0	8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11	1	1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3	0	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6	0	6
	폭처법(상습폭행)	182	5	187
	폭처법(상습협박)	30	0	30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6	1	27
	폭처법(야간·공동폭행)	2	0	2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3,668	346	14,014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13	1	14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76	5	8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14	1	1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42	1	43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3,309	84	3,393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3	0	3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4,109	129	4,238
	폭행	17,077	667	17,744
	폭행교사	1	0	1
	폭행치사	179	3	182
	폭행치상	589	20	609
	협박	2,243	92	2,335
	협박교사	2	0	2
	전체	97,751	2,926	100,677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6,736	838	27,574
	특가법(도주차량)	12,401	319	12,720
	특가법(도주차량)교사	3	0	3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7,823	191	8,014
	전체	46,963	1,348	48,311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2,934	14	2,948
	공직선거법위반교사	1	0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27	0	127
	전체	3,062	14	3,076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2,279	102	2,381
	지방세기본법위반	16	0	16
	특가법(조세)	118	10	128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417	14	431
	전체	2,830	126	2,956
공갈범죄	공갈	684	25	709
	특경가법(공갈)	19	1	20
	폭처법(공동공갈)	802	44	846
	폭처법(공동공갈)교사	2	0	2
	폭처법(상습공갈)	45	2	47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2.	2015. 1.	전체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공갈)	1	0	1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44	1	45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1	0	1
	전체	1,599	73	1,672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7	0	7
	공용자동차방화	1	0	1
	공익건조물방화	2	0	2
	일반건조물방화	69	4	73
	일반건조물방화교사	1	0	1
	일반물건방화	72	9	81
	일반자동차방화	51	0	51
	현존건조물방화	28	0	28
	현존건조물방화치상	8	0	8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1	0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198	8	206
	현주건조물방화치사	4	0	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25	0	25
	전체	468	21	489
총 계		158,073	4,688	162,761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접수건수임.

라. 제4기 대상범죄(2014. 7. 1. ~ 2015. 1. 31.)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230	32
	배임증재	168	24
	전체	398	56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177	32
	전체	177	32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4. 12.	2015. 1.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75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5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933	23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15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138	1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56	0
	전체	2,222	263
체포·감금· 유기·학대 범죄	감금	16	9
	감금치상	7	2
	노인복지법위반	3	0
	아동복지법위반	57	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	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4
	영아유기	3	0
	유기	0	1
	유기치사	2	1
	존속감금	1	0
	존속체포치상교사	2	0
	중감금	3	0
	중감금치상	2	0
	청소년보호법위반	249	84
	폭처법(공동감금)	32	5
	폭처법(공동체포)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1	2
	전체	381	125
	총 계	3,178	476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015. 1. 31.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5.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4. 12.	살인범죄	수	3,877	3	0	3,880
		비율	99.9%	0.1%	0.0%	100.0%
	뇌물범죄	수	2,790	1,741	84	4,615
		비율	60.5%	37.7%	1.8%	100.0%
	성범죄	수	21,387	7,059	1,950	30,396
		비율	70.4%	23.2%	6.4%	100.0%
	강도범죄	수	6,723	48	0	6,771
		비율	99.3%	0.7%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4,662	20,510	5,749	30,921
		비율	15.1%	66.3%	18.6%	100.0%
	위증범죄	수	145	5,141	1,401	6,687
		비율	2.2%	76.9%	21.0%	100.0%
	무고범죄	수	284	5,820	1,870	7,974
		비율	3.6%	73.0%	23.5%	100.0%
	전체	수	39,868	40,322	11,054	91,244
		비율	43.7%	44.2%	12.1%	100.0%
2015. 1.	살인범죄	수	63	0	0	63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73	64	1	138
		비율	52.9%	46.4%	0.7%	100.0%
	성범죄	수	481	361	9	851
		비율	56.5%	42.4%	1.1%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도범죄	수	76	4	0	80
		비율	95.0%	5.0%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115	415	78	608
		비율	18.9%	68.3%	12.8%	100.0%
	위증범죄	수	2	69	30	101
		비율	2.0%	68.3%	29.7%	100.0%
	무고범죄	수	7	101	25	133
		비율	5.3%	75.9%	18.8%	100.0%
	전체	수	817	1,014	143	1,974
		비율	41.4%	51.4%	7.2%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5.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4. 12.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수	169	63	1	233
		비율	72.5%	27.0%	0.4%	100.0%
	사기범죄	수	6,989	84,943	23,610	115,542
		비율	6.0%	73.5%	20.4%	100.0%
	절도범죄	수	4,471	32,190	8,050	44,711
		비율	10.0%	72.0%	18.0%	100.0%
	공문서범죄	수	293	2,856	1,150	4,299
		비율	6.8%	66.4%	26.8%	100.0%
	사문서범죄	수	268	4,064	1,876	6,208
		비율	4.3%	65.5%	30.2%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1,166	13,340	7,539	22,045
		비율	5.3%	60.5%	34.2%	100.0%
	식품·보건범죄	수	288	3,693	7,998	11,979
		비율	2.4%	30.8%	66.8%	100.0%
	마약범죄	수	2,028	11,090	226	13,344
		비율	15.2%	83.1%	1.7%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수	15,672	152,239	50,450	218,361
		비율	7.2%	69.7%	23.1%	100.0%
2015. 1.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수	2	0	0	2
		비율	100.0%	0.0%	0.0%	100.0%
	사기범죄	수	379	3,072	476	3,927
		비율	9.7%	78.2%	12.1%	100.0%
	절도범죄	수	92	802	182	1,076
		비율	8.6%	74.5%	16.9%	100.0%
	공문서범죄	수	17	97	34	148
		비율	11.5%	65.5%	23.0%	100.0%
	사문서범죄	수	13	116	39	168
		비율	7.7%	69.0%	23.2%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39	786	59	884
		비율	4.4%	88.9%	6.7%	100.0%
	식품·보건범죄	수	10	125	299	434
		비율	2.3%	28.8%	68.9%	100.0%
	마약범죄	수	50	335	5	390
		비율	12.8%	85.9%	1.3%	100.0%
	전체	수	602	5,333	1,094	7,029
		비율	8.6%	75.9%	15.6%	100.0%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5.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4. 12.	증권·금융범죄	수	428	511	80	1,019
		비율	42.0%	50.1%	7.9%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1	1,342	2,145	3,508
		비율	0.6%	38.3%	61.1%	100.0%
	폭력범죄	수	3,899	44,142	39,242	87,283
		비율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비율	4.5%	50.6%	45.0%	100.0%
	교통범죄	수	1,519	29,237	12,423	43,179
		비율	3.5%	67.7%	28.8%	100.0%
	선거범죄	수	2,355	66	0	2,421
		비율	97.3%	2.7%	0.0%	100.0%
	조세범죄	수	495	1,032	485	2,012
		비율	24.6%	51.3%	24.1%	100.0%
	공갈범죄	수	105	1,007	179	1,291
		비율	8.1%	78.0%	13.9%	100.0%
	방화범죄	수	444	8	3	455
		비율	97.6%	1.8%	0.7%	100.0%
	전체	수	9,266	77,345	54,557	141,168
		비율	6.6%	54.8%	38.6%	100.0%
2015. 1.	증권·금융범죄	수	44	43	3	90
		비율	48.9%	47.8%	3.3%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0	53	71	124
		비율	0.0%	42.7%	57.3%	100.0%
	폭력범죄	수	131	1,959	1,147	3,237
		비율	4.0%	60.5%	35.4%	100.0%
	교통범죄	수	9	1,266	318	1,593
		비율	0.6%	79.5%	20.0%	100.0%
	선거범죄	수	305	1	0	306
		비율	99.7%	0.3%	0.0%	100.0%
	조세범죄	수	39	88	21	148
		비율	26.4%	59.5%	14.2%	100.0%
	공갈범죄	수	22	102	14	138
		비율	15.9%	73.9%	10.1%	100.0%
	방화범죄	수	40	1	0	41
		비율	97.6%	2.4%	0.0%	100.0%
	전체	수	590	3,513	1,574	5,677
		비율	10.4%	61.9%	27.7%	100.0%

-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5.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4. 7. ~ 2014. 12.	배임수증재범죄	수	56	140	10	206
		비율	27.2%	68.0%	4.9%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15	68	7	90
		비율	16.7%	75.6%	7.8%	100.0%
	성매매범죄	수	90	818	235	1,143
		비율	7.9%	71.6%	20.6%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수	2	15	99	116
		비율	1.7%	12.9%	85.3%	100.0%
2015. 1.	배임수증재범죄	수	19	33	2	54
		비율	35.2%	61.1%	3.7%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11	10	3	24
		비율	45.8%	41.7%	12.5%	100.0%
	성매매범죄	수	38	340	55	433
		비율	8.8%	78.5%	12.7%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수	6	23	57	86
		비율	7.0%	26.7%	66.3%	100.0%
	전체	수	74	406	117	597
		비율	12.4%	68.0%	19.6%	100.0%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5. 1. 3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2014. 12.	2015. 1.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63	1	64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2014. 12.	2015. 1.	전체
	강도살인미수	24	0	24
	살인	1,494	26	1,520
	살인교사	4	0	4
	살인미수	2,025	31	2,056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33	1	3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151	3	154
	존속살해미수	71	1	72
	특가법(보복범죄등)	2	0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3	0	3
	전체	3,880	63	3,943
뇌물범죄	뇌물공여	2,152	54	2,206
	뇌물공여교사	3	0	3
	뇌물공여약속	1	0	1
	뇌물공여의사표시	5	4	9
	뇌물수수	1,451	56	1,507
	뇌물요구	3	0	3
	부정처사후수뢰	83	0	83
	사전뇌물수수	2	0	2
	수뢰후부정처사	101	1	102
	제3자뇌물교부	113	3	116
	제3자뇌물취득	124	4	128
	특가법(뇌물)	576	16	592
	특가법(뇌물)교사	1	0	1
	전체	4,615	138	4,753
성범죄	강간	983	28	1,011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816	13	829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288	17	1,305
	강도강간	81	2	83
	강제추행	8,060	346	8,406
	강제추행상해	198	2	200
	강제추행치상	568	13	58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2014. 12.	2015. 1.	전체
	미성년자간음	7	0	7
	미성년자의제강간	90	3	9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0	1	1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87	2	8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0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	0	2
	미성년자추행	1	0	1
	상습강제추행	5	0	5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78	4	68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61	1	162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64	0	164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	2	0	2
	성폭력범죄(장애인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74	3	177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85	4	38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1	0	13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8	1	15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0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7	0	37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76	3	379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42	0	342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74	13	88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717	40	75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7	1	2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02	6	10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39	4	4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63	1	64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2014. 12.	2015.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3	1	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443	9	45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16	7	423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145	9	15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241	17	25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22	1	32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158	4	16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47	2	4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32	2	3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121	3	12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4	1	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7	0	7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78	0	78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3	1	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1,132	15	1,14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8	7	1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5	1	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8	3	1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5	3	26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83	7	39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1	0	4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90	3	9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956	15	97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등)	350	3	35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73	3	17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410	3	41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54	2	56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2014. 12.	2015. 1.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1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017	20	3,03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16	1	1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33	3	3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1,415	80	1,49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95	10	20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55	7	16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강간)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68	6	7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51	1	5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위계등추행)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9	2	1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362	7	36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4	4	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1	1
	유사강간	83	6	89
	유사강간상해	9	0	9
	유사강간치상	13	0	13
	준강간	644	18	662
	준강간교사	1	0	1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74	3	77
	준강제추행	1,234	48	1,282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8	0	18
	준유사강간	46	1	47
	준유사강간치사	1	0	1
	준유사강간치상	2	0	2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8	0	188
	전체	30,396	851	31,247
강도범죄	강도	675	6	681
	강도교사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2014. 12.	2015. 1.	전체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2,662	31	2,693
	강도상해교사	2	0	2
	강도치사	31	0	31
	강도치상	223	4	227
	준강도	405	3	408
	준특수강도	67	0	67
	특가법(강도)	46	0	46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4	0	64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2,531	36	2,567
	전체	6,771	80	6,851
횡령·배임 범죄	배임	2,224	40	2,264
	배임교사	3	0	3
	업무상배임	2,453	68	2,521
	업무상배임교사	2	0	2
	업무상횡령	12,018	195	12,213
	특경가법(배임)	1,322	35	1,357
	특경가법(횡령)	2,128	53	2,181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0,769	217	10,986
	횡령교사	1	0	1
	전체	30,921	608	31,529
위증범죄	모해위증	91	0	91
	모해위증교사	5	0	5
	위증	5,646	91	5,737
	위증교사	945	10	955
	전체	6,687	101	6,788
무고범죄	무고	7,886	130	8,016
	무고교사	50	0	50
	특가법(무고)	37	3	40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7,974	133	8,107
총 계		91,244	1,974	93,218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5. 1.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2014. 12.	2015. 1.	전체
약취· 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4	1	5
	간음유인	8	0	8
	미성년자약취	47	0	47
	미성년자유인	32	0	32
	성매매인신매매	1	0	1
	영리약취	6	0	6
	영리유인	20	0	20
	추행유인	3	1	4
	특가법(약취·유인)	25	0	25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87	0	87
	전체	233	2	235
사기범죄	사기	109,940	3,715	113,655
	사기교사	6	1	7
	상습사기	418	9	427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3	0	3
	준사기	75	4	79
	컴퓨터등사용사기	2,005	39	2,044
	특경가법(사기)	3,095	159	3,254
	전체	115,542	3,927	119,469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89	3	92
	산림보호법위반	132	4	1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583	17	60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0	2	2
	상습절도	11	11	22
	상습특수절도	0	7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796	47	1,8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184	2	186
	야간선박침입절도	5	0	5
	야간주거침입절도	1,360	32	1,392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20,819	506	21,325
	절도교사	58	0	58
	특가법(산림)	95	3	98
	특가법(상습절도)	3	1	4
	특가법(절도)	7,610	161	7,771
	특수절도	11,935	277	12,212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2014. 12.	2015. 1.	전체
	특수절도교사	28	3	31
	전체	44,711	1,076	45,787
공문서 범죄	공도화변조	1	0	1
	공문서변조	281	19	300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742	23	765
	공문서부정행사교사	8	0	8
	공문서위조	933	36	969
	공문서위조교사	8	0	8
	공전자기록등변작	1	0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532	37	1,56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48	0	48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484	16	500
	변조공문서행사	4	0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0	4
	위조공문서행사	69	3	72
	자격모용공문서작성	3	0	3
	허위공문서작성	167	14	181
	허위공문서작성교사	2	0	2
	허위공문서행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0	1
	전체	4,299	148	4,447
사문서 범죄	변조사문서행사	22	0	22
	사문서변조	317	12	329
	사문서변조교사	1	0	1
	사문서부정행사	6	0	6
	사문서위조	5,374	149	5,523
	사문서위조교사	14	1	15
	사문서위조행사	3	0	3
	사전자기록등변작	8	0	8
	사전자기록등위변작	2	0	2
	사전자기록등위작	63	1	64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2014. 12.	2015. 1.	전체
	위조사문서행사	182	1	18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78	4	18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3	0	3
	허위진단서작성	30	0	30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6,208	168	6,376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17,512	772	18,284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물손상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781	36	1,817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4	0	4
	공용서류무효	36	0	36
	공용서류손상	170	6	176
	공용서류은닉	12	0	12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0	1
	위계공무집행방해	832	20	852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3	0	3
	특수공무집행방해	999	25	1,0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653	25	678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31	0	31
	전체	22,045	884	22,929
식품 ·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80	19	399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934	18	1,95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0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38	3	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834	24	8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2	0	22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2	0	2
	식품위생법위반	4,832	145	4,977
	식품위생법위반교사	4	0	4
	약사법위반	1,047	60	1,107
	의료법위반	2,135	145	2,280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2014. 12.	2015. 1.	전체
	의료법위반교사	10	0	1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643	20	66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77	0	77
	전체	11,979	434	12,413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637	30	1,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42	5	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0,456	344	10,8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075	11	1,086
	특가법(마약)	3	0	3
	특가법(향정)	31	0	31
	전체	13,344	390	13,734
총 계		218,361	7,029	225,390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5. 1.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2014. 12.	2015. 1.	전체
증권·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562	51	61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7	5	22
	증권거래법위반	58	10	68
	특경가법(수재등)	74	9	83
	특경가법(알선수재)	239	13	252
	특경가법(증재등)	69	2	71
	전체	1,019	90	1,109
지식 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43	1	4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2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비밀누설등)	3	0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1	0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77	9	8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보호등)	10	0	1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0	2
	상표법위반	1,973	59	2,032
	실용신안법위반	15	0	15
	저작권법위반	1,347	52	1,399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2014. 12.	2015. 1.	전체
	특허법위반	35	1	36
	전체	3,508	124	3,632
폭력 범죄	상습상해	3	0	3
	상습존속폭행	1	0	1
	상습폭행	3	0	3
	상습협박	2	0	2
	상해	34,726	1,201	35,927
	상해교사	4	3	7
	상해치사	203	6	209
	존속상해	238	5	243
	존속상해치사	16	0	16
	존속중상해	3	0	3
	존속폭행	67	1	68
	존속폭행치사	3	1	4
	존속폭행치상	7	0	7
	존속협박	14	1	15
	중상해	106	2	108
	집단흥기등폭행	1	0	1
	특가법(보복범죄등)	173	0	173
	특가법(보복상해등)	92	4	96
	특가법(보복폭행등)	80	4	84
	특가법(보복협박등)	185	15	200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952	50	2,002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43	3	146
	특수폭행치상	6	0	6
	특수협박	176	2	178
	폭처법(공동상해)	9,066	257	9,323
	폭처법(공동상해)교사	8	0	8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1	1	12
	폭처법(공동폭행)	2,223	74	2,297
	폭처법(공동폭행)교사	6	0	6
	폭처법(공동협박)	253	13	266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0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7	0	7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8	0	8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2014. 12.	2015. 1.	전체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31	1	3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3	0	13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0	0	10
	폭처법(상습상해)	190	9	199
	폭처법(상습존속상해)	5	0	5
	폭처법(상습존속폭행)	10	0	10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18	2	20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5	0	5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6	0	6
	폭처법(상습폭행)	169	10	179
	폭처법(상습협박)	31	3	34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5	0	25
	폭처법(야간·공동폭행)	0	1	1
	폭처법(야간·공동협박)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2,884	498	13,382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7	0	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87	4	91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21	1	22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57	3	60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3,008	132	3,140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4	0	4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4,197	204	4,401
	폭처법(흥기등상해)	11	0	11
	폭처법(흥기등협박)	8	0	8
	폭행	14,061	601	14,662
	폭행교사	3	0	3
	폭행치사	160	11	171
	폭행치상	556	31	587
	협박	1,907	83	1,990
	협박교사	3	0	3
	전체	87,283	3,237	90,520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4,521	920	25,441
	특가법(도주차량)	11,300	418	11,718
	특가법(도주차량)교사	2	0	2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7,356	255	7,61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2014. 12.	2015. 1.	전체
	전체	43,179	1,593	44,772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2,350	288	2,63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71	18	89
	전체	2,421	306	2,727
조세 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1,645	117	1,762
	지방세법위반	2	0	2
	특가법(조세)	74	9	83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91	22	313
	전체	2,012	148	2,160
공갈 범죄	공갈	516	60	576
	상습공갈	2	0	2
	특경가법(공갈)	13	0	13
	폭처법(공동공갈)	663	60	723
	폭처법(공동공갈)교사	3	0	3
	폭처법(상습공갈)	41	14	55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51	4	55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1	0	1
	전체	1,291	138	1,429
방화 범죄	공용건조물방화	5	1	6
	공용자동차방화	2	0	2
	공익건조물방화	2	0	2
	산림보호법위반	4	0	4
	일반건조물방화	60	6	66
	일반건조물방화교사	2	0	2
	일반물건방화	63	8	71
	일반자동차방화	57	2	59
	현존건조물방화	28	1	29
	현존건조물방화치사	3	0	3
	현존건조물방화치상	8	0	8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1	0	1
	현존자동차방화	1	0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191	20	21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8	1	9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8	2	20
	현주자동차방화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2014. 12.	2015. 1.	전체
	전체	455	41	496
총 계		141,168	5,677	146,845

-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5. 1.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2014. 12.	2015. 1.	전체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116	32	148
	배임증재	90	22	112
	전체	206	54	260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90	24	114
	전체	90	24	114
성매매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7	12	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2	1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004	381	1,38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4	2	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74	24	9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22	13	35
	전체	1,143	433	1,576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감금	3	7	10
	감금치상	1	2	3
	아동복지법위반	4	13	17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0	2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1	2
	영아유기	1	0	1
	유기치사	0	2	2
	중감금치상	0	2	2
	청소년보호법위반	102	55	157
	폭처법(공동감금)	2	1	3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2	1	3
	전체	116	86	202
총 계		1,555	597	2,152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15. 4. 13. 양형위원회 제63차 회의 :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15. 4. 14. ~ 4. 20. : 관보 게재용 파일 편집
- 2015. 4. 24. :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공문 시행
- 2015. 4. 30. : 식품·보건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korea.go.kr>)
- 관보 게재용 양형기준은 별첨 1. 자료와 같음

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양형기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형기준 개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최종 의결된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완료

2. 추진 경과

- 식품·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2015. 4. 22.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완료 : 2015. 5. 15.
-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2015. 4. 22.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완료 : 2015. 5. 15.

IV.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치 결과 보고

1. 개요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각급 법원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치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63차 회의(2015. 4. 13.)에서 의결한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조처 기간 : 2015. 5. 4. ~ 5. 22.

다. 회신 기관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0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처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라. 회신자료

- 별첨 2.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치 회신 자료」와 같음

2.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양형인자

- 일반장물 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할 필요

- ▶ 장물범죄 설정 대상에서 '상습장물'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그리고 향후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를 신설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 대상 축소로 인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상습장물'을 삭제하게 되면 '일반장물'과 '누범장물'의 대유형만 남게 되는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등 기존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기본영역('일반장물' 중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의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에 해당하게 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법률상 '상습성'과 구분되면서도, 비난가능성 등 양형에 있어서 동등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가중인자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영역'으로 평가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사안에 있어서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특별가중인자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같은 취지의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하므로, 양형기준 전체 체계의 정합성도 해하지 아니함

나. 대한변호사협회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수정안의 내용

- 장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중 범죄유형을 종전에 1. 일반장물(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과 2. 상습·누범장물로 분류

하던 것에서 상습범 부분을 제외하고 1. 일반장물(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과 2. 누범장물로 수정하는 것임

■ 수정 이유

- 종래 상습·누범장물 범죄유형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및 ‘형법 제363조’로 구성된 ‘상습장물’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제4항)’으로 구성된 ‘누범장물’이 속하고 있었는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4 제4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법조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만, 종전의 상습장물범죄에 관한 상당수의 양형실무가 위헌결정된 위 특정범죄가중법의 법정형 하한인 3년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양형실무를 형법 제363조 상습장물죄의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달리 통계자료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어 권고형량의 범위를 제시하기가 곤란하며, 형법 제363조의 법정형이 변경될 경우 다시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성이 도래할 것이므로 법정형의 변경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습장물범죄 권고형량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었던 일반상습누범절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4 제1항) 역시 2015. 2. 26. 위헌결정이 내려져 일반상습절도 유형에 관한 양형기준도 수정하여야 하므로 일반상습절도 유형의 양형기준 수정을 논의할 때 상습장물범죄 유형의 양형기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상습장물범죄 유형에 대한 권고형량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범죄유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형법 제363조 상습장물의 법정형 하한인 1년을 포섭하기 위하여 상습·누범장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하한을 1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상습범을 제외하고 누범장물만 남게 된다면 누범장물에 대한 법정형 하한은 1년6월이므로 감경영역 하한을 1년6월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상습장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나 가급적 조속히 이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

련할 것을 촉구함. 누범장물의 감경영역 하한을 1년 6월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하므로 반대하지 아니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문제가 된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후속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래의 양형실무를 바탕으로 권고형량의 범위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양형위원회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실무상 단순장물범죄 못지 않게 상습장물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범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조속히 이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양형기준안이 제시하는 권고형량은 종래 양형실무에서 이루어진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통계적 평균치를 제시하는 데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양형실무를 반성하고 규범적으로 양형실무를 선도하는 기능도 담당하여야 할 것인바, 가능한 조속히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양형기준안 수정내용의 다른 한 부분인 누범장물의 감경영역 하한을 종전 1년에서 1년 6월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상습장물을 제외한 누범장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불가피하므로 반대하지 아니함

다. 법무부

○ 개요

- '15. 5. 6. 대법원 양형위원회,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조회 요청

※ 대검 공판송무부 의견 취합 필

○ 장물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 양형기준 수정안

- '15. 7. 시행예정인 '15년 양형기준 관련, 특가법위반(장물)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장물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필요

※ '15. 2. 26. 헌법재판소는 특가법위반(장물)죄에 대해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

- 현행 장물범죄군 양형기준에서 상습장물에 대한 양형기준 삭제하고, 향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반영
- ▶ 기존 양형기준은 특가법의 법정형 하한(3년)에 맞추어 처단형의 범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고형량 통계분석 자료를 기초로 형성된 것으로 형법(제363조)의 상습장물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설정을 위한 통계자료가 없어 적절한 형량범위 설정 곤란

■ 검토의견

-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특가법위반(장물)에 관한 양형기준을 삭제한다는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상습장물죄는 실무상 빈번하게 기소되는 범죄로서 장물범죄 처벌 시 양형기준의 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양형기준 재검토함이 상당함

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첫째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둘째로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셋째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넷째로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장물범죄 양형기준 중 ‘상습·누범장물’ 유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합니다)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로 구성된 상습장물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제4항)으로 구성된 누범장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상습장물의 법정형에 큰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상습·누범장물’ 유형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임

-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사건[2015. 2. 26. 2014헌가16·19·23(병합)]에서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귀 위원회는 현재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상습장물’을 제외하고, 대유형 명칭을 ‘상습·누범장물’에서 ‘누범장물’로 변경하며, ‘누범장물’ 유형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양형기준의 수정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 한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음

V.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90차	2015. 6. 1. 16:00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 상범죄군 선정 검토(1)

VI.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전문위원 개임

가. 개요

- 2015. 4. 28.자로 김혜정 전문위원 사임
- 2015. 5. 15.자로 강수진, 노수환, 이진국 전문위원 기간 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5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다. 위촉 내역

-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2015. 5. 16.자 신규 위촉)
-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5. 5. 16.자 연임 위촉)
-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5. 5. 16.자 연임 위촉)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5. 5. 16.자 연임 위촉)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 참조

라. 진행 경과

- 2015. 4. 28.자로 김혜정 전문위원 사임
- 2015. 5. 15.자로 강수진, 노수환, 이진국 전문위원 임기만료
- 2015. 5. 16.자로 김혜정 전문위원 신규 위촉
- 2015. 5. 16.자로 강수진, 노수환, 이진국 전문위원 연임 위촉

마. 전문위원 구성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교수
수석 전문위원	이재권						
제1팀	황병헌	황병헌	오기찬	최진녕	박지선	이진국	최준혁
제2팀	김현아	김세종	김현아	범현	강수진	김혜경	노수환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15. 6. 8.(월) 11: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김혜경 전문위원

Ⅶ.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5. 6. 8. 양형위원회 제65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5. 6. 중순(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5. 6. 하순(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양형기준 책자 발간 : 2015. 6. 중순

VIII. 2014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1. 개요

- 2015. 2. 2. 양형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2014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2014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2. 수록 내용

- 2014. 4. 27. ~ 2015. 4. 26.까지의 제4기 후반기 양형위원회 활동 및 2015년도 제5기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3. 2014. 4. 27. ~ 2015.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8회)

차 수	일 시	안 건
56차	14. 6. 9.	- 장물, 손괴, 게임관련범위반죄, 권리행사방해, 신용업무경매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2013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57차	14. 7. 21.	- 장물, 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검토Ⅱ) -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설정 방안 심의
58차	14. 9. 15.	- 업무방해, 손괴, 장물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 게임관련범위반죄, 권리행사방해범죄 형량범위 설정 방안 심의(검토Ⅱ)
59차	14. 11. 3.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60차	14. 11. 21.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차 수	일 시	안 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 11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61차	15. 2.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의결
62차	15. 3. 2.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2014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의결
63차	15. 4. 16.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나. 전문위원 전체회의(10회)

차 수	일 시	안 건
80차	2014. 5. 12.	장물,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81차	2014. 5. 26.	권리행사방해, 신용업무경매,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82차	2014. 7. 7.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형량범위) 검토
83차	2014. 8. 27.	- 업무방해, 게임물, 손괴,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형량범위) 검토 - 장물범죄 양형기준안(유형분류) 검토
84차	2014. 10. 6.	장물,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85차	2014. 10. 20.	업무방해,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인자 설정 검토
86차	2014. 11. 10.	59차 양형위원 회의 지시에 따른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범죄 일부 양형인자 재검토 -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인자 추가 검토
87차	2015. 1. 26.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차 수	일 시	안 건
		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회신 결과 검토
88차	2015. 2. 16.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89차	2015. 4. 6.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 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다. 공청회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공청회(2014. 12. 15.)
 -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1차 공청회(2014. 12. 22.)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라. 관계기관 의견조회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에 대한 의견조회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4. 향후 추진 일정

- 연간보고서 초안 작성 : 2015. 7. 초순
- 견본 제작 : 2015. 9. 중순
- 교정 작업 : 2015. 9. 하순
- 인쇄 의뢰 및 제작 : 2015. 10. 중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 2015. 10. 하순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5. 4. 7.	○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	2015. 4. 7.	○ 양형위원회 전, 현직 위원의 명단 및 직함 요청
3	2015. 5. 15.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법정형, 유사범죄 양형기준과의 형평성, 과거 선고형량에 관한 통계, 규범적 조정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국민 일반의 다양한 의견이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유형 분류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시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전, 현직 위원의 명단 및 직함에 관련된 사항은 양형위

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의 연간보고서 부분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달라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 양형위원회는 제60차 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여 이를 토대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 심의한 양형기준을 2015. 2. 2. 최종 의결하여 2015.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의 양형기준 부분(사행성·게임물범죄)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접수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5. 5. 8.	○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일반인 33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함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귀 단체의 의견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별지]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김 혜 경 (金鍾薰)
	생년월일	1972년 7월 14일 생
	직 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 력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연세대학교 형사법전공 석사 ▶ 연세대학교 형사법전공 박사		
주 요 경 력		
▶ 2002.03. - 2005.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 2005.03. - 2006.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9.02.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 ▶ 2014.12. 양형위원회 제11차 공청회 장물범죄 지정토론자 [現] 계명대학교 법경대 경찰학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現] 한국형사법학회 일반이사, 형사판례연구회 간사 ▶ 주요논문 - 2011. 형법 제51조 양형규정의 개정방향 검토		